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범위

동 명	위 치	면 적	거 리 명
영등포2동	영등포4가 435번지 일대	B = 6M L = 200M	신세계백화점 뒷골목
영등포2동	영등포4가 418, 427번지 일대	B = 3M L = 40M	영등포역 옆골목
신길3동	신길동 261번지 일대	B = 7M L = 150M	신길동 텍사스골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3. 10.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2월 2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3월 2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9년 3월 9일 제62회(임시회)제6차 사회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통지도과장 김찬수)

- 가. 폐지이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여객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시 그 처분기준 및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89. 2. 1 동 조례를 제정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 '98. 8. 20.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폐지와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제정시 여객운수사업자의 법령 위반사항 처리기준 및 과징금 부과·징수 기준을 시행령 및 규칙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조례와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조례폐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유제한)

본 조례안은 '89. 2월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현재까지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 징수업무 처리하여 왔으나 '98. 8. 20일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여객자

동차 운수사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징수 기준을 동법 시행령 및 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44
----------	----

제출년월일 : 1999. . .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폐지이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여객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시 그 처분기준 및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89. 2. 1. 동 조례를 제정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 '98. 8. 20.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폐지와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제정시 여객운수사업자의 법령 위반사항 처분기준 및 과징금 부과·징수기준을 시행령 및 규칙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조례와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 가. 폐지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과징금 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 징수조례의 중복.
-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 다. 조치사항 : 없음.
- 라. 조례(안) : 따로붙임.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